사단법인 청소년 길 회원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청소년 길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단법인 청소년 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의 회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회원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원과 회비의 종류)
1. 회원 중 일반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나뉜다.
2. 회원 중 특별회원은 기부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나뉜다.
3. 회원 중 단체회원은 3명 이상의 개인으로 결성된 단체라 말한다.
4. 일반회원은 개인회비를 부담한다.
5. 단체회원은 단체회비를 부담한다.
6. 특별회원 중 기부회원은 일시기부금과 정기기부금 납부로 회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한다.
7. 특별회원 중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특별회원 중 명예회원은 가입절차를 완료한 신청인 중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4조(가입절차)
1. 법인의 회원으로 활동을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와 함께 연회비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
2. 법인의 회원으로 활동을 원하는 사람이 가입절차를 완료한 경우 사무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가입이유 등을 심의 후 가입 여부를 통지한다.
3. 사무처장은 가입이 승인된 회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제5조(연회비)
1. 법인의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다만, 규정에 따른 면제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단체회비는 단체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
가. 4인 이하 : 연 20만원
나. 6인 이하 : 연 30만원
다. 7인 이상 : 연 40만원
2. 개인회원 중 정회원은 연 1만원을 납부하며 평생회원은 1회 50만원을 납부한다.
3. 특별회원 중 기부회원은 1회 1만원 이상을 정기적 또는 일시적인 방법으로 법인에 기부할 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한다.

제6조(납부시기, 절차 및 통지)

1. 이사장은 당해 연도 회비의 액수, 납부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와 동일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회원은 부과된 회비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3. 기관회비는 연 4회 내에서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의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